

검 토 보 고 서

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
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서완석

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
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3월 4일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「소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 등이 개정(2020. 4. 1. 시행)됨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신분 전환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교부세법」 개정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인력 운용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(안 제1조)

나.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신분 전환에 따라 “지방소방공무원”에서 “소방공무원”으로 일원화(안 제2조)

다. 국가직 신분으로 전환되는 소방공무원이 종전과 같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조례의 제명을 수정함과 동시에, 기존의 인용 조문을 정비

(안 제3조, 제4조 및 제5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「소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 등 6개의 법률이 제·개정되어 소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신분과 복지·휴가 등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상위법령 시행시기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1조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「지방교부세법」 개정에 따라 「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제2호를 개정함.
 - 안 제2조는 「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」 제1조 본문 중 지방소방공무원 신분 변화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함.
 - 안 제3조는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「충청북도 재난현장 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」 제7조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‘지방소방령’을 ‘소방령’으로 개정함.
 -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「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」 제22조

제2항과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령 보상조례」 제명 중 ‘지방공무원’을 ‘공무원’으로 일원화하였음.
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「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「소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 등 6개의 법률이 제·개정되어 소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복지·휴가 등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상위법령 시행시기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참고 1

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 주요내용

법률	주요 내용
①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소방공무원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 (3조) ◦ 대통령·소방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근거 마련 (6조) ⇒ (대통령령) 시도 소방공무원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◦ 신규채용, 승진시험,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되,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 및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근거 마련 (11조) ◦ 시도 소방공무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법 적용 (24조) ◦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 (26조) ◦ 고충심사 중 재심 및 소방령 이상 고충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(27조) <p>※ 시행일 : 2020.4.1.</p>
②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방공무원의 종류 중 지방소방공무원을 삭제 (2조) <p>※ 시행일 : 2020.4.1.</p>
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(23명 이내) 삭제 (2조) ⇒ 「소방기본법」에서 시도에 (국가)소방공무원을 두는 근거 신설 <p>※ 시행일 : 2020.4.1.</p>
④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,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 (2조의2) ◦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·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·감독할 수 있음(3조3항) ◦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둠 (3조4항) ◦ 시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(국가)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음(3조의2) ⇒ (대통령령 제정)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(국가)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음 (3조의3) <p>※ 시행일 : 2020.4.1.</p>
⑤ 지방교부세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

법률	주요 내용
<p>일부개정법률안</p>	<p>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로 조정함(4조1항1호 및 3호, 5조3항3호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인력 운용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(9조의4)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< 지방교부세법 부대의견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정부는 2020년 12월까지 2021년 이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것 </div> <p>※ 시행일 : 2020.4.1.</p>
<p>⑥소방재정지원 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(제정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명칭 : <u>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</u> ◦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사무는 소방본부장이 담당(3조) ◦ 인건비계정,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(4조) ◦ 인건비계정 세입은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, 일반회계 전입금,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(5조) ◦ 소방정책사업비계정 세입은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사업비, 일반회계 전입금,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, 국고보조금 등(6조) ◦ 소방사무 관련 금액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고, 그 규모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7조) <p>※ 시행일 : 2021.1.1.</p>
<p>⑦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(10조) <p>※ 시행일 : 2019.12.10.</p>

참고 2

국가직 전환 관련 하위법령 현황

□ 대통령령: 29건(제정 1, 개정 28) / 부령: 7건(제정 1, 개정 6)

구 분	대통령령 29건(20.3.10.공포)	부령 7건(20.3.11,3.13.공포)
소방청 소관	<p>13건 (개정13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방공무원임용령 ○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○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○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○ 소방공무원 징계령 ○ 소방기본법 시행령 ○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○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○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○ 소방공무원기장령 ○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○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○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	<p>6건 (제정1, 개정5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○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○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○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○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○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	<p>19건 (제정1, 개정18)</p>	
행정 안전부 소관	<p>8건 (제정1, 개정7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○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○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○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○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○ 국가공무원총정원령 ○ 국새규정 ○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	<p>1건(개정1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
	<p>9건 (제정1, 개정8)</p>	
인사 혁신처 소관	<p>8건 (개정8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무원임용령 ○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○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○ 공무원 보수규정 ○ 공무원 여비 규정 ○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○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○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	
	<p>8건 (개정8)</p>	

※ 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은 별도 진행

참고 3

국가직 전환 관련 하위법령 주요 내용

법령명	주요 내용
소방공무원임용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대통령·소방청장의 임용권을 현행과 동일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위임 ▶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임명장에 대통령 직인과 국새 날인 ▶ 임용, 인사교류, 교육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 ▶ 소방청장이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채용 대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
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·유지·관리할 수 있도록 함
소방공무원 복무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도 소방공무원 비상근무 등 복무사항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함
[제정]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과 소방본부장·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을 규정 ▶ 시도의 세부 계급별 정원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▶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수요를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 ▶ 소방청장은 시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음
지방교부세법 시행령,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‘소방인력 운용’을 추가하여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, 인건비 지원 시 소방공무원 총원현황을 기준으로 교부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 설치
기타 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, 지방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계급 삭제 등 조문 정비